

2002년 새터에서의 반(反)성폭력 내규 시행 관련 제안서

2002. 1. 13.

수신:39대 중앙운영위원회

발신:14대 총여학생회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대회의(가)를 제안합니다

새터는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장으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2년 전인 2000년 새터의 이러한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새터 기간에 빈번히 일어나는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고자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를 단순히 성폭력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문화를 성찰하고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되어야 문제입니다.

2001년에 역시 새터 내규가 시행되었지만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를 폭넓게 공유하고 각 단위에 맞게 풀어내는데 있어 아쉬운 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터 내규의 위상과 필요성은 이미 합의된 바이며, 이것이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합의된 자치규약'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2002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대회의를 제안드립니다. 2002년 새터를 준비하면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시행의 단대별 책임자들과 함께 새터 반(反)성폭력 실무주체 연대회의(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시행의 준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단위별 실무주체들은 새터 반(反)성폭력 실무주체 연석회의를 통해 각 단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생산과 실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대 집행부뿐 아니라 단대 여성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새터를 준비하는 경우, 여성단위의 일원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시행의 단위 책임자로 연석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터 내규는 과반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되도록 과반 단위에 맞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모임을 1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총여실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새터 내규 시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각 단위별 사정에 맞게 올해 새터 내규의 의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을 잡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첨부>

새터 반성폭력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짠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

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뽐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다'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서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

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심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0. 징계내용